-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제2581호

2021. 03. 16.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1. 3. 3. 유영주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1. 3. 4. 행정재경위원회

다. 상정일자 : 제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

2021. 3. 16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유영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스마트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·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

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
○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
○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함(안 제5조).

○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·운영 계획 수립을 규정함(안 제6조).

○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운영까지를 규정함(안 제7조 ~ 제13조).

○ 주민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내용을 규정함(안 제15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한동석)

○ 제정안의 개요

- 스마트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,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제정안의 제출 배경

- 2020년12월10일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과 동법률 시행령이 시행됨.
- 법 제19조에 "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"라고 하여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.
- 또한, 법 제24조에 "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"를 구성·운영하고

법에서 규정한 조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.

○ 종합의견

- 본 제정안은 상위법을 따르고 있고, 또한 상위법에서 위임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관리·운영 계획과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라고 보고 드림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9명, 출석의원 8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